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타결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신흥 물류 요충지인 조지아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 주력 수출품인 승용차, K-푸드(가공식품, 주류 등) 관세 즉시 철폐
 - 음반 등 시청각, 출판, 교육 서비스 개방 등 K-컬처 확산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게나디 아르벨랏제(Genadi Arveladze)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은 11.27.(수) 서울에서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이하 EPA*)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 금번에 타결된 한-조지아 EPA는 국회에 보고된 EPA 추진 대상 국가 중 첫 번째로 타결된 협정이자 우리나라가 체결한 26번째(협상타결 기준) 자유무역협정이다.

*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

〈주요 경과〉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조지아 EPA 협상 개시에 합의한 이후 그간 두 차례 공식협상, 두 차례 회기간 협상 등을 통해 쟁점을 줄여왔고, 이번에 아르벨랏제 차관 방한 계기에 타결을 선언하게 되었다.

〈한-조지아 EPA 의의 및 평가〉

조지아는 구 소련권 국가 중 가장 개방된 시장중심 경제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중 하나로 개방적 대외정책을 통해 46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넓은 배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유럽을 잇는 교역 요충지에 위치한 코카서스 지역의 교통·물류 거점인 만큼 공급망·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의 2024년 사업준비도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는 규제(3위), 운영효율성(2위) 등 조사 대상 50개국 중 상위권을 차지한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바, 금번 한-조지아 EPA 타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및 사업 추진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Business Ready 2024 World Bank group

정 본부장은 “금번 EPA는 양허 수준 또한 높고 공급망, 교통·물류, 에너지 등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양국의 교역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조지아는 그간 유럽 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독립국가연합(CIS), 중국 등 총 46개국과 14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국제무역질서에 빠르게 편입하는 한편, 최근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신흥 물류 요충지*로 더욱 부상하는바, 이번 EPA를 통해 발칸·코카서스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조지아는 코카서스 지역내 유일한 흑해인접국이자 유라시아의 주요 관문으로, 우리 주요 수출품이 조지아를 통해 코카서스 지역으로 운송되며,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유라시아 노선(중국-카스피해-조지아-유럽)에 위치하여 러-우 전쟁 이후로 물동량 급증

〈주요 타결 내용〉

(상품) 이번 한-조지아 EPA를 통해 상품은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3.3%, 조지아는 91.6%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 시장개방 수준 : (품목수 기준) 한 93.3%, 조지아 91.6%, (수입액 기준) 한 100%, 조지아 99.8%

우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 관련,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및 친환경차에 대한 조지아의 관세가 전면 즉시 철폐된다. 이에, 우리나라 승용차가 일본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조지아 내 수입비중이 높은* 중고차 분야에서도 우리 제품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또한,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K-푸드**와 K-뷰티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되어 우리 식품과 화장품 교역의 지평이 코카서스 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 가전제품, 기계 등 우리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조지아 측 관세 또한 철폐된다.

* 조지아는 배기량 및 제조년도 기반으로 관세를 산출하여 중고차 관세가 신차보다 높은 구조이며, 조지아의 對세계 승용차 수입 중 중고차의 비중이 약 65.3%(‘20~’22년 평균)

** 라면, 조미김, 건조감, 삼계탕, 커피프림 등 농림수산물, 맥주, 소주 등 주류

한편, 조지아의 주요 생산품인 와인뿐만 아니라, 증류주(차차), 천연 탄산수 등에 대해서 우리도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선택의 폭과 효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산품의 경우, 구리 스크랩, 슬랙(slag) 등 국내에서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 금속, 비금속의 수입 관세도 철폐되어 관련 업계의 원료 수급 및 생산안정 또한 기대된다. 그러나, 쌀, 천연꿀 등 우리 측 민감품목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서비스) 운송·물류의 요충지인 조지아의 해운, 도로 화물 운송, 창고업, 화물 주선업 등이 폭넓게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운송·물류 네트워크 다각화 및 수출 원활화는 물론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음반 등 시청각, 출판, 전시업, 교육 서비스 등도 개방되어 조지아 내 한류 접근성 향상*을 통한 한류 확산이 기대된다.

* 조지아 내 K-콘텐츠 제작·보급, K-뷰티·K-푸드 홍보를 위한 박람회,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원산지)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요 공산품을 비롯해 우리 측 경쟁력이 높은 주요 수출품은 역외산 재료나 부품을 활용해 제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육류나 낙농품 등 동물성 생산품과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내 업계의 우려 등을 반영하여, 역외산 재료를 사용할 때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 치즈, 홍삼 등 가공 농축산식품의 경우에도 핵심 원재료는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여 국내 생산 기반과 연계를 강화하였다.

(정부조달) 조지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총 4,800여개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 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자유무역 협정(WTO) 정부조달협정(GPA)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조지아와 GPA 수준의 조달규범*에 합의함으로써 조지아 조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 WTO 정부조달 협정은 각국 조달 제도의 절차적 투명성 강화 및 타국 조달 참여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등이 주요 내용

(지식재산권) 저작권·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을 보호하는 실질적 규범에 합의하고,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관한 효과적인 구제장치* 또한 마련했다. 이를 통해, K-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 기반이 조성되고, 우리 기업의 상표·디자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차단,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저작권 반복침해 집행 강화 등

(디지털 무역) 우리 K-콘텐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금지 영구화 및 우리 디지털제품을 자국 디지털제품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약속 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조지아가 체결한 FTA로는 최초로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의무 등이 금번 협정에 포함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조지아 내에 서버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 없이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을 계기로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임국현 (044-203-5830)
		담당자	사무관	박희경 (044-203-5832)
		담당자	사무관	최수빈 (044-203-5837)
		담당자	사무관	박태현 (044-203-5833)
담당 부서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상품과	책임자	과 장	박다정 (044-203-5790)
		담당자	사무관	김정호 (044-203-5797)
		담당자	주무관	권영준 (044-203-5796)
		담당자	주무관	강선영 (044-203-5793)
담당 부서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책임자	과 장	한주실 (044-203-5810)
		담당자	사무관	김민지 (044-203-5811)
		담당자	주무관	김지원 (044-203-5817)
담당 부서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규범과	책임자	과 장	김수진 (044-203-5820)
		담당자	사무관	이지현 (044-203-5822)
		담당자	사무관	심수진 (044-203-5823)
		담당자	사무관	이유림 (044-203-5825)
		담당자	주무관	이어진 (044-203-5829)
담당 부서	기재부 관세협력과	책임자	과장	권기중 (044-215-4450)
		담당자	사무관	임도성 (044-215-4451)
		담당자	사무관	최윤희 (044-215-4454)

참고 1

한-조지아 교역 및 투자 현황

□ 교역 현황 ('23년 기준)

- 양국 교역은 '1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3년 교역액은 약 2억 불로, 對 조지아 무역수지는 약 1.8억 불 흑자

(단위 : 천불,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16	'17	'18	'19	'20	'21	'22	'23
수 출	97,312 (32.7)	57,925 (△40.5)	79,876 (37.9)	86,467 (8.3)	98,162 (13.5)	103,114 (5.0)	120,543 (16.9)	193,770 (60.7)
수 입	23,878 (67.3)	36,031 (50.9)	70,271 (95.0)	18,641 (△73.5)	14,676 (△21.3)	11,214 (△23.6)	9,957 (△11.2)	12,724 (27.8)
무역수지	73,434	21,893	9,605	67,826	71,499	91,900	110,586	181,046
교역액	121,190	93,956	150,147	105,108	112,838	114,328	130,500	206,494

※ 조지아는 한국의 93위 수출대상국, 128위 수입대상국 ('23년 기준)

□ 주요 교역품목 현황 ('23년 기준)

- 우리의 對조지아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아연도금강판, 합성수지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타정밀화학원료, 직물류, 동괴및스크랩 등

(MTI 4단위 / 출처 :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금액(천불)	비중(%)	수입품목	금액(천불)	비중(%)
승용차	92,795	47.9	기타정밀화학원료	4,082	32.1
아연도금강판	14,722	7.6	직물제의류	3,418	26.9
합성수지	14,259	7.4	편직제의류	3,044	24.0
건설중장비	13,700	7.1	동괴및스크랩	915	7.2
윤활류	6,587	3.4	주류	366	2.9
수출액	193,770	100.0	수입액	12,724	100.0

□ 투자 현황 ('23년 기준)

- 우리의 對 조지아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약 3.4억불이며, 조지아의 對韓 투자 누계액은 약 61만불

(신고기준 / 단위 : 천불 / 출처 : 수출입은행, 산업부)

구 분	'16	'17	'18	'19	'20	'21	'22	'23	누계
한→조	90,000	-	67,361	20,005	30,000	30,000	30,050	24,006	338,806
조→한	-	-	-	-	170	-	-	-	609

참고 2

「한-조지아 EPA」 협상 추진 경과

- 조지아측은 주요 계기 시 자국 경제성장을 위한 최우선 중점 협력국으로서 한국과의 FTA 추진 의사를 지속 타진

* '19.1월 통상협력국장-주한대사 면담, '19.12월 한-조지아 공동위(차관급), '20.5월 양국정상 통화 등

- '20.1월 한-조지아 FTA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22.1월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동연구* 등 준비 작업 진행

* 시장개방으로 양국 GDP(우리측 최대 0.002%)와 소비자 후생(우리측 최대 23.37백만불) 증가 및 공급망(망간)·물류인프라·재생에너지(수력발전)·농업(와인)·관광 등에서 협력 유망

- '23.3월 양측은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에 합의

*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Market Access) 요소를 포함하되, 상대국과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요소를 강화한 무역협정

- '23.3~9월 한-조지아 EP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 사전 절차 추진

- 3월 공청회* 개최,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9월 국회 상임위(산중위) 보고

* 자동차부품협회 등 참석자들은 조지아의 지정학적 이점(아시아-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 등) 및 안정적 투자환경과 우리측 기술력 등을 활용한 호혜적 EPA 체결 가능성에 기대감 표명

- '23.11월 협상개시 후 2차례 공식협상('24.2월, 5월) 및 2차례 회기간 협상('24.4월, 9월) 등 4차례 대면협상 진행

- '24.9월 제2차 회기간 협상 계기 실질 진전 도출로 협상 타결 기반 마련

- '24.10월 '한-조지아 EPA 최종타결안' 대외경제장관회의 상정 및 가결

참고 3

상품 관련 주요 내용 및 의의

1. 상품 양허

□ **[자유화 수준]** 양측은 “즉시철폐, 5년철폐, 10년철폐” 3가지 카테고리로 관세 철폐에 합의하고, 품목수 90%를 상회하는 높은 자유화수준 달성

○ **우리측 자유화 수준: 품목수 기준 93.3%, 수입액 기준 100%**

(단위: 개, 만불)

카테고리	품목수	비중	수입액 (20~22)	비중	주요 품목
즉시 철폐	9,806	86.8%	1,011	88.2%	-
무세	2,239	19.8%	878	76.6%	· 구리 스크랩, 시멘트동, 항공기용 엔진, 액정 모니터(LCD) 등
유세	7,567	67.0%	133	11.6%	· 포도주, 광천수, 맥주, 보드카, 브랜드, 알루미늄 합금, 여성용방직의류 등
5년 철폐	351	3.1%	0	0%	· 월계수 잎, 기타 탄소섬유, 주방용품, 목재 상자 등
5년 내 철폐(소계)	10,157	89.9%	1,011	88.23%	-
10년 철폐	380	3.4%	135	11.8%	· 조제 식료품, 조주정, 베르무트, 남성합성 바지, 인조섬유티셔츠, 여성합성원드재킷 등
10년 내 철폐	10,573	93.3%	1,146	100%	-
양허 제외	756	6.7%	0	0%	· 천연꿀, 신선과일(사과, 배 등), 인삼, 호두, 밤, 잣, 합판 등
총 계	11,293	100%	1,146	100%	

○ **조지아측 자유화 수준: 품목수 기준 91.6%, 수입액 기준 99.8%**

※ 조지아측의 수입액 기준은 잠정치

(단위: 개, 만불)

카테고리	품목수	비중	수입액 (20~22)	비중	주요 품목
즉시 철폐	9,282	90.6%	6,507	99.8%	-
무세	8,255	80.6%	4,861	74.5%	· 평판압연제품(철, 비합금강), 불도저(자주식), 의약품, 정제유, 타이어,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 등
유세	1,027	10.0%	1,646	25.2%	· 승용차, 맥주, 소주, 조미김, 건조감, 삼계탕, 라면, 커피프림, 잎담배, 껌, 담배, 헤어제품 등
5년 철폐	35	0.3%	0	0%	· 김치, 튀김가루, 플라스틱 관·파이프·호스, 기타 건축용 석재·부분품, 인조거트 등
5년 내 철폐(소계)	9,317	91.0%	6,507	99.8%	-
10년 철폐	67	0.7%	0	0%	· 전자담배, 버섯(건조), 호두, 밤, 음료, 과일주 등
10년 내 철폐(소계)	9,384	91.6%	6,507	99.8%	-
양허 제외	858	8.4%	14	0.2%	· 인스턴트커피, 베이커리제품(일부), 타일·판석 등(시멘트), 전선·케이블, 포장용기 등
총 계	10,242	100%	6,522	100%	

☞ 양측은 발효시점에 한 86.8~조 90.6%의 품목에 무관세 적용 예정

□ 조지아 양허 특징

- **(자동차)** 모든 승용차(신차, 중고차, 친환경차) 관세 즉시철폐, 그 외 자동차는 무관세 지속 약속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전면 개방
 - 일본 등 EPA 미체결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제고가 전망되며, 특히, 신차보다 관세 및 수입비중이 높은* 중고차 분야에서 우세 예상
 - * 조지아는 배기량 및 제조년도 기반으로 관세를 산출하여 중고차 관세가 신차보다 높은 구조이며, 對세계 승용차 수입 중 중고차의 비중이 약 65%('20-'22년 평균)
- **(화장품)** 최근 5년('19-'23)간 對조지아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화장품(클렌징, 모발제품 등)의 관세를 철폐하여 K-뷰티의 글로벌 시장 확대
 - * 우리 對조지아 화장품 수출(MTI 4 기준, 무협) : '19년(82.4만불) → '23년(519.6만불)
 - 우리 기업들이 조지아산 와인(킨즈마라울리(Kindzmarauli))을 원료로 한 화장품을 개발*하고 조지아에 수출한 사례도 있어, 양국 간 강점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을 통해 우리 화장품의 수출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 * LG생활건강('18년) : 바디클렌저, 뷰티풀스마일('21년) : 기초화장품(수분크림, 앰플, 로션 등)
- **(공산품)** 정부 주도 인프라 개발사업 착수 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건설 장비,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무관세를 지속하는 등 폭넓은 시장접근 확보
 - * 조지아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교통·물류, 에너지, 농업 등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는 '조지아 사회경제발전 전략: 조지아 2020' 발표
 - ** 조지아는 '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87%까지 확대를 목표로 '조지아 2030 기후 변화 전략' 발표,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및 재생에너지 입찰 프로젝트 진행 중
- **(농림수산물)** 농식품(라면*, 쇠고기, 삼계탕, 커피프림 등) 및 주류(맥주, 소주), 임산물(건조감, 호두, 밤 등), 조미김** 등 수출유망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여 코카서스 지역내 K-푸드 진출 기반 마련
 - * '24.10월 기준 우리측 對세계 라면 수출액은 약 10.2억불로, '23년 라면 연간 라면 수출액(9.5억불)을 10개월 만에 달성(전년 대비 30% 증가)하여 역대 최고 실적 돌파
 - ** 김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출 8%가 증가하여 '23년 김 수출 1조원 달성

□ 우리 양허 특징

- (공산품) 우리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철폐하였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업계 민감성을 고려하여 최장기철폐
 - 구리 스크랩, 기타 알루미늄 합금, 슬랙(slag) 등 국내에서 원료로 활용 가능한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즉시철폐
 - 조지아측 수출유망품목인 완성의류 관련, 최근 對조지아 수입이 증가한 품목*에 대해 10년 최장기 철폐하여 관세 경감에 따른 업계 충격 완화
- * 예시 : 남성바지(합성섬유), 티셔츠(인조섬유), 여성윈드재킷(합성섬유) 등
- (농림수산물) 와인*, 증류주(차차), 천연 탄산수 등 조지아측 對세계 주력 수출품목은 발효 시점에 관세를 철폐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
- * 조지아는 8,000년 전부터 와인을 생산한 "와인의 원산지"로, '23년 기준 對세계 와인 수출이 약 2.6억불(전년 대비 3%↑)을 달성하는 등 와인은 조지아 대표 수출품목
- 단, 쌀, 천연꿀, 인삼, 호두, 잣 등 전통적인 민감품목은 양허제외하여 우리 업계 보호

2. 상품 협정문

□ 주요 결과

- (관세 현행동결(standstill)) 양국의 양허 품목뿐만 아니라 양허 제외 품목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대해 추후 관세 인상 또는 새로운 관세 도입 금지
- (수출입 제한) 수출제한 채택 전 서면통보 및 요청시 협의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 수출제한 발동 요건 강화
- (상품의 일시반입) 양국이 가입한 국제협약 및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반입되었다가 다시 반출되는 상품의 무관세 반입 보장 재확인
- * 무관세 일시반입 대상 품목 : 상업용 샘플,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전시용 물품,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

- **[기대 효과]** Standstill에 따라 미양허 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관세 현행동결 의무가 적용*되는바, 교역원활화 및 무역의 예측가능성 증진

* 미양허 상품 중 특정관세(주류: 리터당 금액 부과) 제외 평균 관세율 11.36%

- 양측 수출제한 조치시, 사전통보 및 협의 근거를 원용해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3. 무역구제

- **[주요 결과]** 무역구제 조치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정 중심으로 합의

- (세이프가드) 동일한 상품에 대해 양자·다자 세이프가드 동시 발동 금지, 세이프가드 조치 최초 적용 기간 2년 후 1년만 연장 가능 등 합의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전 사전 통보 및 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 강화

- **[기대효과]** 우리의 對조지아 수출이 수입대비 약 6배 많은 바*, EPA 발효 후 對조지아 수출 급등의 경우 조측의 무역구제 조치 가능성에 대비

* 한-조지아 교역 규모('20-'22 평균): (수출) 65.2백만불, (수입) 11.5백만불

4-1. 원산지 규정

- ① **[농축수산물]** 우리측 민감성을 반영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 설정
- **(완전생산기준)** 산 동물은 역내에서 출생·사육되어야 하고, 동물성 생산품(낙농품 등)도 역내에서 출생·사육된 산 동물에서 채취 필요
 - **(품목별 원산지기준)** 농축수산물은 대부분 완전생산기준으로 합의
 - 라면, 소주, 커피(인스턴트 커피 등), 차(茶) 등은 역외산 재료 사용 허용
 - 홍삼 조제품, 치즈 등은 국내 업계의 민감성 및 생산·수출 연계를 위해 역내산 재료를 사용할 경우 원산지 인정
- ② **[공산품]** 우리측 경쟁력이 높은 주요 수출품은 역외산 재료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
- **(누적기준)** 상대국의 원산지 재료를 활용하여 일방 당사국이 최종재 생산시, 상대국의 원산지 재료를 최종재 생산국의 재료로 간주
 - **(미소기준)** 비원산지 재료의 비율이 미미할 경우, 원산지 기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원산지 인정
 - * 섬유류는 중량 기준 10% 이하 / 여타 상품은 가격 기준 10% 이하
 - **(품목별 원산지 기준)** 승용차·철강·기계류 등 주력 수출품은 해외 원자재 조달, 글로벌 소싱 등을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 마련
 - * 대부분 4단위/6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내부가가치 40% 이상
 - 조지아 기체결 대비 역내 부가가치기준을 **완화된 수준**으로 합의 (조-EU/튀르키예 50-55% 이상, 조-중 45% 이상)
- ③ **[역외가공]** 개성공단 운영 재개시 역외가공 제품의 역내산 인정을 협의하는 **한반도 역외가공특 설립 합의** (한-EU FTA 문안 동일)
- * 역내산 재료로 개성공단 등 역외에서 가공한 제품은 양측 합의 조건으로 원산지 인정

4-2. 원산지 절차

① 주요 결과

- **(원산지 증명)** 원산지 증명 편의를 위해 기관증명과 자율증명 방식을 병행하고, 원산지 증명의 종류로 전자 원산지 증명서*(e-C/O)를 인정

* EODES(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를 통해 관세당국 간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C/O

- (유효기간) 원산지 증명서 발행일(신고서는 작성일)부터 1년간 유효

- (제출 면제) 소액 물품(소포·휴대품)*은 원산지 증명 제출을 면제

* (한국) 소포 또는 휴대품 \$1,000 이하, (조지아) 소포 \$500 이하, 휴대품 \$1,200 이하

- **(EODES)** 전자적 방식의 원산지 증명서 교환 및 인정을 위해 양국 관세당국 간 EODES* 개발 노력 조항을 도입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

- **(특혜관세 사후신청)** 수입통관 이후에도 특혜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청 기한은 양국의 자국법에 따르도록 합의

- **(원산지 검증)** 수출입자 서면검증, 관세당국을 통한 간접검증, 수출자 방문검증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통보기한 등을 명시하여 실효성 확보

- 수입국의 서면검증 요청에 회신하지 못하거나 방문검증 요청이 거절되는 경우 등에 수입국은 특혜관세 적용 거부 가능

- **(경과 규정)** 협정 발효일에 이미 수입국으로 운송 중인 물품 등도 발효 후 180일 내 수입국에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할 경우 인정

② 평가 및 기대 효과

- 전자 원산지 증명서 인정 등 수출입자의 원산지 증명 편의와 다양한 검증 방식 도입 등 관세당국의 협정 집행 효율성을 균형있게 반영

- 다각적인 원산지 증명절차 운영으로 특혜관세 적용 등 협정 활용이 확대되어 양국 간 교역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1. 서비스 협정문 및 양허

① 주요 결과

- **(협정문)** 국제해운서비스 부속서를 통해 자국 항만을 접근·이용하는 상대국 선박에 내국민 대우 약속
 - 이를 통해, 조지아 항만에 입출항하는 우리 선박에 수수료 부과, 통관 절차, 항만 시설 이용 등에 대해 조지아 선박과 동일한 대우가 보장되어 편의성 및 경쟁력 제고
- **(양허)** 조측은 우리 관심 분야인 운송, 물류, 음반 제작 등에서 시장 개방, 우리측은 조측 관심 분야인 케이터링 및 환경서비스, 물리적 시험 성분 서비스 등 개방

구분	분야	개방 내용
조지아측	해운(국제여객·화물)	▶ 국경간 서비스 공급 또는 현지 진출시 외국인 지분, 공급자 수 쿼터 등에 대한 제한 없이 서비스 공급 허용
	도로 화물 운송	
	물류(화물 주선, 창고업 등)	▶ 현지 진출시 외국인 지분, 공급자 수 쿼터 등에 대한 제한 없이 서비스 공급 허용
	음반 제작	▶ 국경간 서비스 공급 또는 현지 진출시 외국인 지분, 공급자 수 쿼터 등에 대한 제한 없이 서비스 공급 허용
	출판	
	교육	
우리측	기내식 케이터링	▶ 국경간 서비스 공급 또는 국내 진출시 외국인 지분, 공급자 수 쿼터 등에 대한 제한 없이 서비스 공급 허용
	환경(토양지하수 정화 등)	
	물리적 성분 시험 분석	▶ 국내 주재를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 허용
	경비업	▶ 국내에 설립된 법인에 한해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 5종류의 경비서비스 허용

② 평가 및 기대 효과

- 운송·물류, 음반 제작, 출판업, 교육 서비스 등의 개방을 통해 조지아를 거점으로 운송·물류 네트워크 다각화 및 한류 확산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운송·물류) 코카서스 지역 내 우리 수출 품목의 운송·물류 효율성 제고 및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 조지아는 코카서스 지역내 유일한 흑해인접국이자 유라시아의 주요 관문으로, 우리 주요 수출품이 조지아를 통해 코카서스 지역으로 운송되며,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유라시아 노선(중국-카스피해-조지아-유럽)에 위치하여 러-우 전쟁 이후로 물동량 급증
- (문화) 현지에서 K-콘텐츠의 제작, 보급, 마케팅 등이 활성화되어 K-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한 한류 확산 및 K-콘텐츠의 입지 강화 기대

2. 디지털 무역

- **[결과]** 국경간 정보 이전 허용 등 주요 디지털 통상 규범을 도입하고, 사이버 보안 등 협력 요소를 규정하여 디지털 경제 활성화
- **[핵심 규범]**
 - **[무관세/비차별 대우]**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및 디지털제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의무 약속으로 K-콘텐츠 수출 안정성 및 경쟁력 확보
 - **[정보 이전]** 국경간 정보 이전 허용으로 조지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이전 및 활용하여 부가가치 창출 지원
 - * 예시) 조지아에 진출한 우리 게임 기업이 현지에서 수집한 조지아의 사용자 취향, 운영 패턴 등을 국내 본사가 공유 받아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게임 아이템 개발 등에 활용 가능
 - **[설비 현지화/소스코드 금지]** 서버 등 컴퓨팅 설비의 현지 설치 요구, 소스코드 요구 금지되어 조지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부담 완화
 - * 예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기업이 조지아 현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현지에 별도 서버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 없이 서비스 공급 가능
 - **[전자상거래 촉진]** 전자 서명 및 전자 인증의 상호운용성 제고, 전자결제 촉진 등을 통해 양국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 **[협력]** 디지털 경제관련 경쟁 정책, 핀테크 사이버 보안 분야 등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1. 정부조달

① 주요 결과

□ (협정문) 일부 WTO GPA⁺ 조항 포함 GPA 수준 협정문 구성에 합의

* 조지아는 WTO GPA 비가입국

○ (주요 원칙) 비차별 의무, 대응구매 금지 등 실체적 의무와 조달 정보 및 절차의 투명성 보장 등 절차적 의무 합의

- 한국 공급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조달 계약과 무관한 추가 조건 요구를 금지하여 공정성 제고
- 조달기관이 공고 시 포함해야 하는 정보* 및 공급자가 입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투명성 제고

* 조달기관의 명칭·주소, 조달기관을 접촉하고 조달 관련 모든 문서를 입수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관련 비용, 조달될 물품·서비스의 성격과 수량 등

○ (WTO GPA⁺ 조항) 전자적 공고 의무화 등 일부 GPA⁺ 요소 포함

- 조달예정 공고 및 요청에 따른 낙찰정보 제공 시 전자적 공표 의무화*

* GPA에서는 종이 또는 전자 매체 선택 가능

○ (국내 구제절차) 조달 관련 문제 발생 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심의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보장

□ (시장 개방) 조축 기체결 최고수준 및 우리측 GPA 수준으로 개방

○ (양허 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상호 개방

- 우리측은 기체결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방

* 중앙정부 46개, 지방정부 67개, 기타 공공기관 24개

- 조축은 전체 4,800여 개 발주기관*에 대해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 전면개방

* Georgian Unified Electronic System of Public Procurement(Ge-GP)에서 확인 가능

- **(양허 하한선)** 한국은 GPA 수준으로 양허하고, GPA 비가입국인 조지아는 기체결 수준(조-EFTA)으로 양허

* (한 국) 중앙정부 △상품·서비스 SDR 130,000, △건설서비스 SDR 5,000,000
지방정부 △상품·서비스 SDR 400,000 , △건설서비스 SDR 15,000,000
공공기관 △상품·서비스 SDR 400,000, △건설서비스 SDR 15,000,000

* (조지아) 중앙정부 △상품·서비스 SDR 130,000, △건설서비스 SDR 5,000,000
지방정부 △상품·서비스 SDR 200,000, △건설서비스 SDR 5,000,000
공공기관 △상품·서비스 SDR 400,000, △건설서비스 SDR 5,000,000

- **(양허 범위)** 기체결 수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건설서비스 포함) 개방
 - 조측 국내법상 조달 체계를 고려하여 BOT 상호 미개방*에 합의

	상품	서비스	건설서비스
한국	군수물품 제외 전체 개방	WTO GATS 양허수준 개방	중소기업 유보분 및 BOT 제외 CPC 51 건설서비스 개방
조지아	전체 개방	전체 개방	BOT 제외 건설서비스 개방

- **(양허 예외)** 우리측은 기체결에 반영된 예외(중소기업 유보분,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급식 프로그램, 공항 조달)를 모두 명시, 조측은 예외 사항 미포함

2 평가 및 기대 효과

- WTO GPA 비가입국인 조지아와 시장개방을 포함한 정부조달 챕터를 합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조지아 조달시장 진출 확대 기반 마련

- GPA 수준의 조달 절차 조항을 타결한바, 조지아 조달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기대

2. 지재권

① 주요 결과

- 저작권·상표·디자인 등 실체적 보호규범 및 침해 관련 실효적 집행 규범에 합의하여 한-EU FTA 수준의 포괄적 지재권 규범 마련
 - **(저작권)** △저작권자 권리 보장, △기술보호조치* 우회 금지, △권리 관리정보** 보호 등 저작물 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 조항에 합의
 - * CD 복제 방지, 웹페이지 마우스 우클릭 금지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
 - ** 저작권자 식별을 위한 로고 또는 워터마크 삭제 금지 등 보호 조치
 - **(상표·디자인)** 우리측 제안 △악의적 상표 출원 거절·등록 취소, △유명 상표 보호, △미등록 디자인 보호 노력 등에 합의하여 상표·디자인 규범 제고
 - **(지리적 표시(GI))** 상품의 지리적 출처 관련하여 대중의 오인 유발 및 불공정 경쟁행위를 금지하고 보호대상 GI 목록 합의(양측 각 24개)
 - * (조) 무쿠자니, 사페라비, 차차 등 와인 및 증류주 24개 ↔ (한) 여주쌀, 순창전통 고추장, 괴산 고춧가루, 고려홍삼, 완도김, 청도 반시 등 농·수·임산물 24개 교환
 - **(집행)** 조측 기체결에 미포함된 형사집행,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 집행*을 추가 합의하여, 조지아 기체결 중 가장 높은 집행규범 마련
 - *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차단,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저작권 반복침해 집행 강화 등

② 평가 및 기대 효과

- 조지아 內 우리 창작자 및 기업의 지재권이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는 데에 중요한 실체적 규범 마련하는 성과 도출
 - △K-콘텐츠의 안정적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상표·디자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규범 도입을 통해 증가하는 온라인상 침해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 통관 및 무역원활화

① 주요 결과

- ☐ **(사전심사)** 우리 수출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평가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
 - 신청자 편의를 위해 **발급기한**(필요 정보 접수 후 90일내)을 명시
 - 기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사전심사에 관한 모든 정보의 인터넷 공개 의무 명시
- ☐ **(물품 반출)** 무역 원활화 및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일반 물품(가능한 48시간 내) 및 **부패성 상품**(가능한 빠른 시간 내)의 신속한 반출 규정
 - 부패성 상품에 대하여 검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세관통제 하에 보세물품의 국내 이동을 허용하는 등 **최근 국제논의 사항을 반영**
- ☐ **(특송화물)** 조지아의 산악 지형을 감안하여 특송화물의 반출 시간은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한 **빨리 반출**하도록 규정
 - **소액 면세 기준**은 우리나라와 조지아의 국내법상 기준이 상이(조지아 300라리, 한 150달러)하여, **각국 법에 따라 적용**하도록 합의
- ☐ **(사후심사)** 신속한 물품 반출을 위하여 **사후심사*** 조항을 반영
 - * 관세법 §38조②에 따라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심사
- ☐ **(관세 협력)** 세관 상호지원 협정을 통해 무역을 촉진하고, 관세 관련 사안과 관련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내 논의를 개시**하도록 합의

② 평가 및 기대 효과

- ☐ 기체결 FTA, WTO TFA 수준에서 협정문을 타결하였으며, 관세평가에 대한 사전심사 등 **WTO TFA 미규정 사항**을 추가 반영
 - 조지아와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원활한 통관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양국 세관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4. 환경

① 주요 결과

- 한·조 양측이 EU와 각각 FTA를 체결 및 한-조 간 환경·기후 분야 협력 강화 필요에 따라 한-EU 및 우리 기체결 FTA 수준의 환경규범 마련
 - **(기후변화)** 한·조 양측이 기후변화 대응 인식 강화 필요를 인정하고, 관련 조치를 수립·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근 국제논의 및 합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문 합의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호간 협력의 중요성 인정,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목표 달성의 중요성 인정,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조치(무역·투자 조치,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이행 노력 촉구 등
 -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보존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중요성 인정, 자연자원 보유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전자원에의 접근을 촉진
 - **(협력)** 환경챕터 목표* 이행을 위해 무역 관련 환경 이슈에 대한 상호 협력 중요성을 인정하고 포괄적인 협력 활동에 합의
 - * 무역 관련 환경이슈에 관한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
 -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수자원, 순환경제, 대기오염, 토양오염, 환경재난, 지속가능 상품·서비스, 청정·재생에너지, 환경교육 및 대중인식, 환경기술·산업, 산림, 해양자원 등 협력가능한 분야 포괄
 - **(정부 협의)** 환경 관련 사안과 관련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60일 내 논의 개시, 추가 논의 필요 시 환경위원회 소집 및 합의 노력, 환경 챕터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분쟁해결 수단 非 적용

② 평가 및 기대 효과

- 최근 기후·환경 이슈와 한·조가 각각 기 체결한 한-EU 수준을 반영하되 한-EU에 포함된 행정부담을 불포함하고 상호 환경협력은 강화
- 환경규범 도입을 통해 기후변화·환경문제 공동대응 기반 마련 및 다양화된 환경협력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보 기대

5. 경제협력

1 주요 결과

□ (주요 내용) 양국 간 상호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3개 절(일반규정·협력분야·이행수단)으로 챕터 구성

- (일반규정) ▲무역·투자·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 확인, ▲정부·민간·학계 참여 촉진, ▲수요 기반의 포용적 협력활동 추구
- (협력 분야) 에너지·자원, 공급망, 교통·물류, 관광, 투자, 문화 6개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협력 체계 마련

- (에너지·자원) 자원 분포·매장량 등 정보 공유, 공동 R&D,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등 에너지·자원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

- (공급망) 양국의 핵심 관심 분야 및 품목을 파악하고, 공급망 위기시 협력을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 등을 포함

- (교통·물류)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 안전성 증진, 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기술 협력 등

- (관광) 관광정책 개발 및 집행, 양국 간 항공 연결성 증진 등

- (투자) ▲양국간 투자 장려 ▲필요시 협력 의무 ▲투자 활동 예시 (경제협력 강화·투자흐름 증진 등) 등을 규정

- (문화)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의 체결, 문화 관련 인력의 일시입국 등을 포함한 문화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의 기반 구축

- (이행체계) 협력위원회 구성 및 작업반 수립 등을 통한 이행 보장

□ (기대 효과) 지정학적 요충지, 물류·교통 거점인 조지아와 잠재력 있는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양국 무역·투자 증진에 기여